

4. 거례(舉例)

과거를 시행하는 절차와 그에 관한 예규(例規(예규))를 거례(舉例(거례))라고 한다.

[1] 녹명시 거례(錄名時舉例)

과거에 응시할 사람(거자:舉子)이 인적사항(신원)을 등록하는 절차가 녹명(錄名)이다. 이 녹명할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무과 시험이 시작되기 2일 전날, 아침 일찍 해 뜨기전에 녹명(등록)을 담당한 관원이 자리에 앉아서 잡색군(雜色軍) 1명을 온주아문(溫州衙門)의 ; 녹명 성책(錄名成冊) : 1건

사조 성책(四祖成冊) : 1건

파기·거주병록 성책(파記·居住併錄 成冊) : 1건

이상의 네가지 문서책은 차정(次精)의 지질을 사용하며 청릉지(靑菱紙)로 겉표지를 싸서 상홍사(常紅紗: 보통의 붉은 실)로 책을 꿰매어 제본한다.

(3) 홍문관(弘文館)에 제출할 문서

방목 성책(榜目成冊) : 1건

(4) 사헌부(司憲府)에 제출할 문서

방목 성책(榜目成冊) : 1건

(5) 한성부(漢城府)에 제출할 문서

방목 성책(榜目成冊) : 1건

파기·거주병록 성책(記·居住併錄 成冊) : 1건

이상, 세기관(홍문관, 사헌부, 한성부)에 보낼 문서들은 모두 청장의(靑粧衣: 청색빛갈의 책표지)에 상홍사(常紅絲: 보통 붉은 색실)로 책을 맨다.

(6) 순영(巡營→監營: 충청도 관찰사가 있는 공주 감영)에 제출할 문서

방목성책 (榜目成冊) : 1건

녹명성책 (錄名成冊) : 1건

사조성책 (四祖成冊) : 1건

가·거주병록 성책(記·居住併錄 成冊) : 1건

시수성책 (矢數成冊) : 1건

이상, 순영(巡營)과 병영(兵營)에 제출할 문서의 규격은 병조(兵曹)에 제출하는 문건과 동일하다.

(8) 삼시관(三試官: 상시관(上試官), 부시관(副試官), 말시관(末試官)에게 제출할 문서

방목성책(榜目成冊) : 각 1건씩 청장의(靑粧衣: 청색 겉표지)를 하여 상홍사(常紅絲: 보통의 붉은 실)로 책을 맨다.